

軍事的 和解・信賴 構築方案

정 영 태*

◁ 目	次 ▷
I. 서 론	Ⅲ. 남북한 군사적 화해・신뢰 구축을 위한 접근 방안
Ⅱ. 남북한 군사력의 실체 비교	Ⅳ. 결 론

I. 序 論

남북한 간에 軍事的 和解와 信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相互不信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상호 공격하여 壞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납득되도록 하기 위해 양측의 군사력의 실체에 대한 투명성이 提高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용이라는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짐으로써 남북한의 和解 및 信賴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不信이 강하게 지속될 경우, 비록 餘他 分野의 交流와 協力이 진척되더라도 대치상태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에 있는 쌍방이 가질 수 있는 신뢰는 限界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사분야의 신뢰 구축이야말로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바로 남북양측의 軍事的 不信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남한이 機能的 統合理論에 입각하여 대북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를 대폭 허용하는 조치를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에 대한 軍事的 不信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조차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화해·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군사적 화해·신뢰 조치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남북한의 軍事的 實體를 分析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軍事的 和解·信賴構築을 위한 接近方案을 차례로 論하게 될 것이다.

II. 南北韓 軍事力の 實體 比較

1. 兵力比較

1993년 현재의 남북한 총 常備軍事力은 남북한 각각 65만 5천명(방위병 제외,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103만명(육군에 해병병력 포함)으로서 북한의 총 병력이 남한 총 병력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다.¹⁾

다른 한편으로 1993년 현재 남한의 예비병력은 450만이며 북한의 그것은 540만 이상(해군 40만 포함)으로 추산되고 있다.²⁾ 그런데 북한의 예

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3), p.67.

2)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3~1994* 참조.

비병력은 남한의 예비병력에 비해서 장비면에 있어서나 훈련면에 있어서 훨씬 우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역 교도대는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과 많은 종류의 화기를 보유함으로써 실제로 정규군 못지 않는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武器體系 力量 比較

가. 陸・海・空軍 在來式 武器體系

‘국방백서, 1993~1994’는 1993년 현재 남북한이 각각 전차 1800대/3800대, 장갑차 1900대/2500대, 야포 4,500문/10,300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의 대북한 지상무기 체계상의 열세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地上裝備의 老朽化 정도, 性能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북한 지상장비의 경우 많은 數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성능 또한 남한에 비해 뒤떨어 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차의 경우 구형인 T-34 전차의 많은 數가 이미 폐기처분 또는 교육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표 1〉 國防部 發表 海軍武器體系 保有現況

구 분		89년 백서	90년 백서	91~92년 백서	93~94년 백서	95~96년 백서
전투함	북한	460	426	436	434	434
	남한	170	150	170	190	180
전투함	북한	24	24	24	26	26
	남한				1	2
전투함	북한	240	250	310	330	
	남한		40	50	60	60

出處: 대한민국 국방부, 「國防白書 89, 90, 91~92, 92~93, 93~94, 95~96

이 크다. 화포 또한 50% 이상이 60년대 이전의 구형 노후화된 장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76.2mm 야포는 800여 문 정도가 50년대에 도입되어 성능이 매우 불량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상무기의 數的 劣勢를 質的인 性能補強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海軍武器體系 보유상 북한의 數的 優勢는 93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8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國防白書」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함정은 1척당 평균 707톤(99,000톤/140척)이며 북한의 것은 척당 평균 136톤(68,000톤/500척) 정도이므로, 남한은 평균적 함정의 크기와 화력 및 행동반경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³⁾ 남한에 있어서 해상무기 범주별로 보면 수상전투함, 경비함정이 약 76%를 점하고 있다. 이는 곧 남한의 해상무기가 주로 防禦型 武器體系로 편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한은 1993년 12월 독일 209형 1천 2백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상전력만을 가지고 수중전력 우위를 점해 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오던 상태에서 탈피하여 수중전력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장보고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보다 水中速力 및 機動速力이 뛰어나고 침단지휘사격 통제장치를 구비함으로써, 한국의 해군은 북한 잠수함의 교란작전에 대응하여 입체적 대잠전력을 강화하게 되었다.⁴⁾

북한의 海軍武器體系는 소형함정 위주로 연근해작전 및 침투작전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200톤 이하의 小型艦艇體系(약 83% 보유)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작전반경에 있어서 극히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3) 리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토대의 구축을 위한 모색,” 함택영 리영희 외(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131.

4)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잠수함 확보계획을 추진하여 1992년 10월과 1993년 8월에 국내 조선소에서 1,200톤급 ‘이천함’ 및 ‘최무선함’을 진수시켰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p.88.

높은 과도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 海軍武器體系의 약점으로 艦艇의 老朽化(20년 이상 노후함정이 24%)와 舊型(4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함정들의 작전능력 발휘상의 제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도탄정 및 어뢰정 등 소형, 고속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奇襲攻擊作戰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경비 및 연안전투함정, 상륙함정을 약 92%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함정의 64%가 경제속도 20KTS 이상의 고속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火力과 航速距離에서 우월한 驅逐艦隊를 보유하고 있는 남한 해군은 상대방의 공세에 직면하여 正面攻擊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國防白書」에 의한 남북한 항공장비를 비교해 볼 때 80년대 이전에 비해서 남북한의 항공장비는 공히 크게 증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은 북한에 비해 보다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보유 항공기 중 많은 부분이 전술기이며 수송기조차도 대부분 浸透作戰 支援을 위한 것이다. 전술기 가운데 신형기는 MIG-21과 MIG-

〈표 2〉 南北韓 航空機 保有量 比較

구 분		89년 백서	90년 백서	91~92년 백서	93~94년 백서	95~96년 백서
전술기	북한	830	840	850	850	850
	남한	480	500	520	520	520
지원기	북한	770	480	480	480	500
	남한	690	190	190	190	160
전술기	북한		280	290	290	290
	남한		530	580	600	630

出處: 대한민국 국방부, 「國防白書 89, 90, 91~92, 92~93, 93~94, 95~96」 參照.

23·29 및 SU-25기 등 약 30%에 불과함으로써 북한의 전투기 대부분이 70년대 이전의 구형모델이며 경제수명 20년이 지난 장비가 4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투기의 60%가 작전반경이 37도 이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레이더, 항법장비 등 航空電子 부분이 미약한 저성능 항공기의 보유율이 65% 이상 됨으로써 북한은 全天候 航空作戰에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⁵⁾

반면 남한은 헬기를 제외한 공군장비에 있어서 數的 劣勢를 보이고 있지만 性能의 優越性과 操縱士의 技術的 優越性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헬리콥터의 보유면에 있어서 북한이 특공대 침공작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성능 고정익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양적·질적인 면에서 북한을 능가함으로써 남한의 공군력에 우월성을 더하고 있다.

나. 戰略武器 體系

북한은 화생무기를 위한 3개의 연구소, 8개 생산시설, 그리고 6개 정도의 저장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투발수단으로서 북한은 지상투발수단(박격포, 야포, 방사포, FROG-5/7, SCUD), 해상투발수단(화력지원정) 및 공중투발수단(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류성 등 유독가스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독가스 5톤은 핵무기 20메가톤의 위력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보호 및 제독장비의 자체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장비 전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화생전 수행능력(보유화학 무기 1천 톤)은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어 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상당한 공격력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⁶⁾ 그러나 남한은 이에 상응하는 공격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방어수단 구비에 있

5) 귀순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정된 사실들임.

6) 崔聖彬, “北韓의 防衛産業 現況,” 「북한연구」, 제3권 22호(1992 여름), pp.122-23.

어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화생무기와 더불어 핵무기 개발에도 全力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 1개에서 부터 4~5개 또는 6~7개의 핵폭탄을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는 여러 추측 보도가 있어 왔으나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소위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하는 재처리 시설을 통하여 플루토늄을 1회 이상 추출하여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핵무장의 최종단계인 운반수단의 확보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으로써 핵 위협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1980년대~90년대 현재 북한은 地對地 미사일인 SCUD-B(사거리 300)를 15기 정도 Frog 3/5/7을 54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최근 남한 전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SCUD 地對地 미사일(사거리 500km)부대를 연대 규모에서 여단 규모로 증편하고 있으며 일본까지를 사정거리로 하는 「로동 1호」 미사일을 개발 시험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⁷⁾ 반면 남한은 사거리가 250km 정도인 地對地 유도미사일 현무를 12기 정도, 기타 사거리 40km 정도인 Honest John을 12기, 그리고 사거리 140km인 Nikes Hercules를 100기 정도⁸⁾ 보유하고 있다.⁹⁾ 전반적으로 볼 때 보유량에서나 종심 타격 능력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미사일에 의한 방공능력 면에 있어서는 남한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개량형 SCUD 미사일의 경우 남한의 地對地 미사일에 비하여 사거리는 길지만 투발오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SCUD는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 시설을 목표로 할 경우 심각한 정도의

7) 일본에서 발행하는 「군사연구」지 1993년 8월호에 북한이 로동 1호에 이어 사정거리를 각각 1,000km/1,500km로 하는 로동 2/3호도 개발 중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발표되었다. 「世界日報」, 1993.7.28.

8) Nikes Hercules는 미국산 防空誘導 미사일로서 남한은 총 100기 중에서 몇몇을 地對地 유도무기 체제로 변환시켜(Nikes Hercules Korea)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유수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9) Fran ois Godement ed., *Le desarmement Nucleaire En Asie*, collection Enjeux internationaux Travaux et Recherches de l'IFRI(Paris : Masson, 1990), p.180.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심리적·정치적 영향력은 크나 군사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다. 軍需産業

1960년대부터 북한은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軍需産業의 기반을 대폭 확대하였다. 즉 북한은 소화기를 계속 개발함과 동시에 비반동포, 박격포, 방사포 등 중화기의 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60년대에 中·蘇製를 모방하여 지상군 사단급편제 기본화기의 자급체제를 완비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전년대와 다름없이 軍事建設 우선의 竝進策을 추진하면서 군수산업을 더욱 확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대 이후부터 구축함을 비롯하여 잠수함, 고속상륙정 및 포함 등을 자체 건조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¹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地上武器의 양산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북한은 MIG-19기 1~3대를 실험용으로 생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¹⁾

1980년대부터 1993년 현재까지 북한은 共通武器인 각종 유도탄(對戰車, 地對地, 地對艦, 艦對艦, 地對空) 및 헬기, 훈련기 등의 조립 및 모방 생산을 해오고 있다. 특히 地對地 유도탄(SCUD)의 경우 북한은 1976년 이집트에서 SCUD-B를 도입하여 중국의 기술지원하에서 자체 개발 및 생산을 하였으며, 198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연생산능력은 100발 정도 추정되고 있으나 1988년 이후의 생산실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군수공장은 총포공장 17개소, 탄약공장 35개소, 전차 및 장갑차공장 5개소를 비롯하여 9개의 항공기공장, 3개의 유도무기공장, 5개의 통신장비공장, 8개의 화생무기공장 등 총 134개소로서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더 나아가 북한은 일반기계공장의 생

10) 극동문제연구소, 「北韓全書 1945~1980」(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p.438, p.673.

11) 「産經新聞」, 1976.4.25.

12) 丁炳浩, “南北韓 軍事力: 그 實像과 虛像,” 「國際政治論叢」 제29집 1호(1989), p.117.

산시설을 활용하며 무기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전시에 군수전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계, 화학 등 제부문의 공장을 각각 13개소, 21개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군피복이나 군화 등 군수품류를 생산하는 일반군수공장을 여러 곳에 두고 있다.

한편 남한의 防衛産業 개발은 197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남한은 탄약이라든가 일부의 소화기 생산에 머무르고 있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연계되어 미군의 철수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에 있어서 방위산업은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1973년 韓美年例安保會議 동안 미국은 먼저 남한의 防衛産業 발전을 위한 원조를 약속하였다.¹³⁾ 이것을 바탕으로 남한은 1970년대에는 육군의 기본 병기인 M-16 소총, 탄약, 통신장비와 고속정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다연장로켓, 155mm 개량곡사포와 자주포, 장갑차와 전차, 사거리 연장탄 등의 지상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구축함(1980년) 및 경비정(1982) 등의 해상장비를 생산·배치하였다. 더 나아가 남한은 500MD헬기(1982), F-5E 전투기 등 항공장비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방위산업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¹⁴⁾

현재 남북한 군수산업 생산능력을 비교해 보면 地上武器(방사포, 대전차 화기, 대공화기), 海上水中武器(잠수함) 및 共通武器(地對地 유도탄)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으며, 박격포 및 구축함 등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의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武器自給度 측면에 있어서 북한은 야포, 전차 등 地上武器 분야에서 우세하며 남한은 고속정, 수상전투함 등의 해상무기 및 헬기 등의 空中武器 분야에서 우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남북한의 軍需産業 능력은 生産能力 比較면에 있어서나 武器自給度 측면에 있어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남북한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13) Janne E. Nolan, *Military Industry in Taiwan and South Korea*(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86), p.62.

14) 丁炳浩, “南北韓 軍事力 : 그 實像과 虛像,” pp.116-17.

3. 準備性(readiness)과 軍事戰略

가. 準備性(readiness)

한국군은 韓·美聯合 防衛計劃하에 초전 적응태세, 수도권 방위태세, 후방지역 방위태세, 국지도발 대응태세, 비정규전 및 테러도발 대응태세 등을 확립해 오고 있다. 한편 전쟁지도체제 측면에서 남한은 전시와 준전시 에 총력전 수행을 위한 국가의 제기능을 유기적·통일적 일체관계로 체계화하여 개전에서 종전까지의 제반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최고의 정책결정기구로서 國務會議과 國家安保會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구는 현대전의 양상에 맞추어 全戰時 總力戰體制를 대비한 기구가 아니라 평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남한은 총력전 수행을 위한 통합된 단일 정책결정기구 조차 결핍하고 있다. 전쟁지휘를 위한 국가통제본부의 구조와 기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통수 예비본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이동지휘가 가능한 지휘본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조차도 아직 없다. 요약하면, 남한이 비록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여러 방어태세를 확립해 오고 있다고 하나 전체적인 全戰時 總力戰體制 구축의 미비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경고 없이도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발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전쟁수행에 대한 한국군의 준비성은 인민군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인민군에 수시로 「전투동원태세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부대 전투태세 준비역량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만 하더라도, 북한은 83년도에 「준전시상태돌입명령」, 84년도엔 「전투동원태세 강화명령」, 85년도엔 「전투동원준비 강화태세명령」, 86년도엔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인민군으로 하여금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라”고 반복 선동해 왔다. 북한의 군사정책 또한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게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의 견지라는 방침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북한은 국내외 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시에는 독자적으로 전면전, 국지제한전, 특공전 등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인민군 부대 조직의 준비성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인민군의 전투 태세에 대한 준비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軍事戰略

軍事戰略이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術인 바, 전술한 현존 軍事能力은 군사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군사력은 상대성과 상황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相對性和 狀況性を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군사전략인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직면하여 守勢的 개념의 방어전략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攻勢的 抑制戰略으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공세적 억제전략이란 모든 전력을 입체적으로 통합운동하여 전쟁초기에 적을 방어한 후 공세를 가한다는 것이다. 즉 아군이 전방과 후방, 그리고 공중과 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조기에 격파하고 적의 후방을 타격, 지휘체제를 마비시키고 기동타격으로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세적 억제전략 역시 防禦戰略概念을 기초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방어전략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결정적인 전력을 집중시킬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조기경보가 어려운 남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의 전격적인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의 어려움은 휴전선에서 불과 30마일, 비행거리 3분 이내에 불과한 수도 서울을 쉽게 함락케 할 공산이 크며 동시에 남한의 공세적 방어전략이 무력화되기 쉽다. 이외에도 남한의 산업시설구조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조기방어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의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이 중국 및 구소련 국경근처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SAM과 대공포에 의해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역공세 전략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침전략을 감행할 목표로서 인민군의 구체적인 전략구상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이와 관련된 다수의 호전적 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있어서 인민군의 기본군사전략은 정치전략을 우위로 하여 3대혁명역량의 先蓄積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 시기에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速戰速決戰으로 전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군의 정치·군사적 역량강화, 정치·사상적 우세에 의한 양적우세 打勝, 유격전적 우세에 의한 군사기술적 우세 打勝, 선제 기습공격에 의한 速戰速決 등이다. 북한은 우선 全面 奇襲攻擊으로 적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주도권을 장악하여 유리한 전략적 여건하에 전쟁을 수행하는 기습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습전략은 북한전략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기습으로부터 비정규군에 의한 전술적 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의 기습공격을 통해서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 비정규전에 의한 또다른 전투로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남측의 동원을 방해하고 지원 및 증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여 民·軍의 戰意를 상실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쟁을 속전속결화 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외세개입 이전에 首都圈 早期掌握 등의 획득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무모한 전진을 계속하지 않고 먼저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한 다음 政治協商을 통해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4. 南北韓 軍事力 實體의 綜合評價 및 軍事的 和解·信賴構築의 必要性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 능력에 있어서 不均衡(非對稱)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不安한 均衡’(駐韓 美軍事力과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전제된 균형임)을 유지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별 평가를 남북한 군사력의 총체적 평가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군사력의 총체적인 종합평가는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의 組合방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보다 客觀的인 총체적 綜合軍事力 評價는 어느 요소에서부터 어느 요소까지를 더하거나 곱하는지, 요소간의 加重値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및 화생무기 보유는 남북한의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의 절대적 우세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의 獨自的인 戰爭遂行能力 缺如, 全戰時 總力戰體制 결핍, 基本戰略의 脆弱性(전쟁초기의 제한된 기간의 방어력 발휘에 한정된 방어전략에 치중), 북한의 기습공격에 취약한 남한산업(군수산업 포함) 구조의 集中化와 露出性, 縱深방어능력 취약성 등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상대적인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으로 북·러, 북·중과의 同盟 弱化 가능성, 러시아 및 중국의 대북 軍需支援 弱化, 유류 및 군수품의 부족으로 인한 大部隊 訓練不足, 경제력 약화에 따른 보급품 부족으로 軍隊士氣 低下, 현대의 첨단 전자기술의 낙후로 인한 C3 I체제의 低發展 등은 북한의 군사력을 제한하거나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종합적인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대체적으로 南韓이 북한에 비해 전반적인 「絶對的」 劣勢趨勢에서는 벗어나 있으며 향후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준비성, 공세적 속전속결전략, 대량살상무기 측면에 있어서의 우세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도발모험을 감행해 온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를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급선무는 북한이 그들 군사력의 몇몇 요소의 우세를 과신하거나 정치적 목적(‘남조선 해방’)달성을 위하여 군사적 모험

을 강행하게 됨으로써 ‘불안’하게나마 유지해 온 남북한 균형상태를 깨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부문별로 비대칭상태에 놓여있는 군사력이 남북한의 균형을 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남북한 상호간의 화해·신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미국과 구소련 간에 벌여 온 군비경쟁에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선택한 방안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1년에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구소련에 대해서 “군비증강에 돈을 쓸려면 쓰고, 신무기 개발경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자”는 식으로 對소련 強硬策을 구사하였다. 레이건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게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구소련이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대미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지를 약화시키게 됨으로써 미국과 구소련 간의 전쟁 위험성을 반감시키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레이건의 對소 軍備競爭 강화정책은 구소련이 군비통제·군비축소 실시 협상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구소련은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경쟁 강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 경제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군비강화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구소련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력을 소모하게 될 경우 소련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⁵⁾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인식은 결국 동서군축의 가시적인 표현인 미·소간 INF 협정 조인, 유럽으로부터의 소련군 철수 등의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경쟁 강정책은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한이 대북 군비경

15) Kevin Lewis, “Arms Control Prospects for Northeast Asia : What lessons from recent development elsewhere?,”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War, held in Seoul 14~16 June 1990, p.5.

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즉 북한은 김정일 유일지배라는 특수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합리적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쟁도발을 통한 상황 역전을 도모하여 정권안보를 구축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가 북한군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은 우리의 고유이익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서 나오는 직접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국제적 경쟁대열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가 수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보다는 화해·신뢰 구축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경우 과도한 군비투자로 군복무로 인한 우수인력의 기회비용 상실이 크며, 군수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여타 산업의 성장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 남한에 있어서도 지금 이상의 과도한 군비투자가 지속될 경우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군사적 화해·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굿비(James E. Goodby) 대사는 남북한 군사적 和解・信賴構築 협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① 긴장, 신뢰부족, 기습공격의 우려, ② 군사력에 있어서 불안정한 비대칭, ③ 국가차원의 민감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간 정치적·법적 제도 결여, ④ 한반도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하는 주요 주변 강대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잘못된 정의 등을 지적하였다.¹⁶⁾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비무장지대의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잘 나타

16) James E. Goodby, “한반도에서의 신뢰안보 구축: 협상의 조건,”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의 군비통제」 국제학술회의(1990.10.10~11)에 제출된 논문, p.1.

나고 있다. 또한 신뢰부족의 문제는 김일성 자신의 솔라즈(Solaz) 의원과의 대화에서 잘 표명되고 있다.

“내가 이자리에서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¹⁷⁾

북한의 체제목표, 군사전략 및 전술, 무기 및 병력체계, 기존의 대남 군사적 테러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대남기습공격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남북한 군사력의 불안정한 비대칭의 문제는 앞의 남북한 군사력의 부문별 실체 분석에서 잘 밝혀진 바 있다. 남한은 북한과 어느 정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성, 화생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주한미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의 위협제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기 보다,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적 대남적화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한 걸림돌 제거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야기시키는 또 다른 문제로서 남북한간에 제기되는 제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장치의 결핍이 지적될 수 있다. 물론 군사적 차원에 있어서는 기존의 군사정전위가 존재해 왔지만 이것 조차도 북한은 유명무실화 시켜나감으로써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협조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한 긴장의 지속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상충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강대국이 비협조적일 경우 한반도의 화해·협력 노력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17) Stephan Solaz,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12~21, 1980(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참조.

남북한의 군사적 화해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 이상과 같은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포괄적 또는 단계적으로 접근되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Ⅲ. 남북한 軍事的 和解・信賴 構築을 위한 接近 方案

1. 不信, 緊張, 奇襲攻擊 憂慮 除去

남북한이 안고 있는 군사적 불신을 약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유럽의 예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군사력의 투명도 措置(transparency measures)를 취하게 될 경우,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투명도 조치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가 이다.

군사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투명도 조치의 본래 목적이다. 군사활동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치상태에 있는 쌍방간의 빈번한 협상의 기회가 생겨난다. 이러한 협상기회는 적대국간의 협력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갖고 있는 호전성이라든가 적대적 감정을 확인,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투명도 조치는 상호간에 동의된 명세에 나타나 있는 양측 군사력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대치 상태에 있는 양국이 분야별 군사력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자료 교환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군의 편제, 조직, 배치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교환에는 연대 및 여단급까지의 편제 및 장비에 관한 도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데이터에 있어서의 변동은 일어날 때마다 보고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현장검증으로 교환된 자료의 정확성을 파악하게 된다. 더 나아가 훈련을 목적으로 한 병력의 이동은 이미 쌍방이 동의한 절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고, 읍저버들은 훈련진행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¹⁸⁾

군사력 안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군사연락관 배치를 통한 정보획득과 판단이 현지사찰 방법의 하나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통일전 동서독이 군사연락단을 교환함으로써 통상적인 군사연습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관찰을 시행해 온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호사찰 제도로서의 군사연락단은 상호간에 비정례적인 군사력 증강이 시도되지 않고 또 대규모의 병력이 공격태세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순회 군사참관단을 특정지역에 상주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안보적 상황 감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연락단으로 하여금 군사시설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여행의 권리를 주어 상주시키게 된다면 양측 특정지역에서의 군사력 태세 전환 사실을 감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⁸⁾

대북 군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관심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을 제거하여 상당한 기간의 전쟁준비 없이는 단기간에 남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심각한 대치상태에서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휴전선이 우리의 수도와 지근의 거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 군사력의 운용태세에 관한 협정을 맺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美·蘇 海洋事件에 관한 協定(The Incidents at Sea Agreement), 軍事活動 防止에 관한 協定(The Agreement on Prevention of Dangerous Military Activities) 등은 미·소간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군사력 운용관련 협정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협정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하는 협정이 체결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기습공격의 방지를 위해서는 쌍방 군사력의 위치, 장비소유 혹은 운용에

18) James E. Goodby, “한반도에서의 신뢰안보 구축: 협상의 조건,” pp.4-5.

19) “Verifying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Winter 1991) 참조.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²⁰⁾ 특히 북한의 기본 군사전략이 기습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제한의 중요성은 한층 더 제고된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조인된 스톡홀름 협정은 13,000명 병력규모 이상 지상군 부대의 이동은 일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42일 이전에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協定은 17,000명 이상 규모의 병력 이동이 있을 때는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참여 35개국 참관단의 초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경험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인 롯펠드(Adam D. Rotfeld)는 유럽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는 좀더 좁은 의미로 운용적 군비통제에만 국한시켜 검토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비 대사는 운용적 군비통제 개념을 ‘사단병력수 또는 탄도탄수 자체에 대한 통제보다 부대 이동과 관련된 군사력의 운용적 측면에 관한 통제’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비 式의 좁은 의미로 볼 때, 신뢰안보 구축 조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은 물론이다. 군비 대사에 의하면, NATO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던 데(즉 병력, 탱크, 장갑차, 야포 등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수적 열세), 운용적 군비통제 관련 조치들만 잘 합의되면 이러한 수적 열세문제들로부터 야기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들은 기습공격을 억제하고 이를 조기발견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²¹⁾

북한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990.5.31)」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20) James E. Goodby, “한반도에서의 신뢰안보 구축: 협상의 조건,” p.5.

21) Adam D. Rotfeld, “유럽군비통제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의 군비통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p.8.

- ①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②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③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군사연습을 폐지한다.
- ④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①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를 철수한다.
- ②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①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²²⁾

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안은 좁은 의미의 군비통제 내용인 군사운용 제한과 관련한 몇몇 요소, 즉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조차도 북한 자신에게 유리하고 남한측에는 불리한 내용일색이다. 즉 미국과의 군사훈련 및 장비도입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전방에 60% 이상을 배치한 군대의 후방철수나 기습공격방지 및 수도권(서울) 공격용 부대의 후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투명도, 즉 군사적 자료의 공개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군사배치, 장비병력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 운용적 제한조치를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同提議는 실천적 의

22) 「로동신문」 1990.6.2.

지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포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軍事的 非對稱性 緩和

남북한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은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긴장완화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분석한 남북한 군사력의 실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평가 결과를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볼 때 남북한의 군사력은 요소별로 비대칭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남북한 당국은 비록 위에서 밝혀진 대로 상대측의 군사력의 실체를 어렵듯이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그 이유는 남북한 쌍방이 상대측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 즉 투명도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굿비 대사는 “군사력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비롯한 검증(verification)의 방법이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과정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다.²³⁾

여기에서 출발하여 남북한은 쌍방의 군사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군축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성숙되어 남북한 군축협상문제가 제기될 경우 재래식 무기통제에 관하여서는 유럽의 동일한 결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outcomes)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이 원칙에 따라 우월한 군사력을 가진 측은 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가서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양측은 협상의 목표로 탱크 20,000대, 장갑차 3,000대의 공통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23) James E. Goodby, “한반도에서의 신뢰안보 구축: 협상의 조건,” p.6.

24) Goodby, “한반도에서의 신뢰안보 구축”.

南北韓 軍事力 有形要素 比較・評價

		비 고			특 기 사 항
		북한 우위	남한 우위	남북한 동 등	
병력	상비 병력	○			• 남한의 17만여명에 달하는 방위병을 포함하면 남북한 상비병력차는 줄어들것임
	예비 병력	○			• 수적우세 • 훈련 및 보유무기 우세
무기 체계	지상무기체계	○			• 수적우세(소화기, 박격포 등은 남한이 우세) • 북한의 지상장비는 남한의 것에 비해 노후화 정도가 큰것이 많으며 성능 또한 남한의 것에 뒤지는 것이 많이 있음 • 남한은 지상무기의 수적 열세를 질적인 성능보강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켜 나가고 있음
	해상무기체계			○	• 북한이 수적으로 우세, 그러나 총 톤(ton)수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세 • 남한은 방어위주의 해상무기체계 보유, 북한은 공격위주의 해상무기체계 보유 • 성능과 노후화 정도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의 우위에 있음
	공중무기체계		○		• 북한이 수적으로 우세 • 성능과 노후화 정도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의 우위에 있음 • 훈련량과 질 측면에서 남한이 우세 • 정비능력에 있어서 남한이 우세
	전략 무 기	화생무기	○		• 남한에는 존재치 않음
		핵무기	○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미사일	○		• 수적 측면에서 북한 우세 • 공격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우세, 방어무기 측면에 있어서 남한우세
	지원능력		○		• 전반적으로 남한이 우세
	군수산업 능 력			○	• 박격포, 구축함 등에 있어서 남한 우세 • 방사포, 대전차화기, 대공화기, 잠수함, 유도탄 측면에서는 북한 우위 • 그 이외 거의 동등수준임

다. 그런데 남북한은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 의미를 두고 군비 감축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력 감축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제안(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한 바 있다. 동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①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 명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 명 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 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 폐기한다.
- ③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 ①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 ① 무력축감 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사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이행 정형을 검증한다.”²⁵⁾

이에 더하여 북한은 同 提案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외국무력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즉 북한 당국은 남과 북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과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이

25) 「로동신문」, 1990.6.2.

“남조선 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 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철수 되도록”하며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하자는 이전과는 다른 단계적 미군철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구조적 군비통제 요구」는 그 내용의 현실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신뢰성 결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뢰조성」과 「군비통제」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선결조건과 순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축제안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그들의 체제변화, 즉 개혁과 개방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적 의지 및 군축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표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군축제안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의 군축추진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 ① 적정규모의 상호균형 무력 유지와 단계적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통일 후의 군사력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기습공격이나 공세작전능력 배제 조치를 우선시켜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상황을 먼저 창출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화생무기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③ 남북한 군축 진척과 연계하여 대외적 군사협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균형관계 유지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상당한 정도의 남북(남북)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④ 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한 군사력 상호감축을 추진한다(유사 군조직 및 예비전력 포함).
- ⑤ 군축을 감시·보장하는 검증체계를 확립한다.

3. 政治的・法的制度 構築

굿비 대사는 남북한간 武力不使用 協定 및 體系的인 對話의 시작은 분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平和協定 체결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평화협정이 문건의 수에 대한 공식화 문제보다는 그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분단된 남북한간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관계 수립
- ② 한반도에서 군사력 규제
- ③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제3국과의 관계 정립

그러나 북한이 일찍부터 주장해 온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관련, 북한은 1960년대에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최고 인민회의는 1974년 3월 미국 상・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對美平和協定 체결을 최초로 제의하였으며, 1984년 1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名義의 「서울 당국과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과 대미 평화협정 동시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유엔, 북한, 중국의 각 사령관이지만, 중국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대부분의 유엔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이므로, 미국과 북한이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한다. 반면 남한정부는 「미제국주의자의 괴뢰」로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모든 한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對美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협정관련 기본개념에 있어서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적 분단극복을 위해서라기 보다 북한 자체의 대남적화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벌여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남한의 대북 안보 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남조선의 해방」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불안하게나마 유지해 온 균형조차도 꺾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항구적인 평화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무력적화 의지 포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체결의 본래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바, 우리 정부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경우에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미위협 인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하여 군사적 위협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은 유사시 효과적으로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한·미 합동군사역량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북한의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해줌으로써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좀더 실용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기반 조성 차원에서 북·미간 불가침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북·미간 불가침협정이 ① 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② 유엔군 사령부 해체, ③ 미군철수 또는 감축 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는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법 측면에서도 북·미간 불가침협정

26) 鄭永泰,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 樣相과 核政策 展望」(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32-37.

은 평화협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불가침협정은 현존 질서의 바탕 위에서 침략을 예방하는 사전조치로서 영토적·정치적·군사적 기존 상태를 확인·선언하는 협정인데 반해, 평화협정은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북·미간 불가침협정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불가침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소위 교차 불가침협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남북한 군사적 불신제거 및 남북한 군사적 비대칭성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도록 노력을 거친 후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어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포괄적인 제도구축을 위해서도 동시에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한의 불가침 이행과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즉 남북한은 합의서 발효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행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의·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이와 관련하여 몇차례에 걸친 협의활동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기본합의서라는 포괄적 틀속에서 남북군사공동위를 재가동하여 군사적 화해·신뢰구축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4. 周邊 強大國에 대한 機能的 接近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바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들 4강은 한반도에 대해서 그들의 지정학

적 관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의 군사적 화해·신뢰 조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4강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군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에 군대까지 주둔시켜 놓은 상태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화해·신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군사적 불신제거, 군축,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여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남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추진 활동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들 4강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비현실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지지하고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비한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미간 사전 입장조율을 충분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북·미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정 체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평화협정이 북·미간에 직접적으로 체결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보다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북·일수교교섭 추진 및 대

북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도 동북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확대를 위해서 북·미 평화협정체결에는 반대하고 이의 동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이들 강대국들에게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민족자결원칙」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에 직접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남북한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예, 2 + 2)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을 제도화할 위험성이 있는 방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結 論

남북한은 공히 군사적 和解・信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름대로의 군사적 조치들을 제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1984년 1월에 한국 및 미국에 「3자회담」을 요구한 뒤 점차적으로 軍縮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85년 4월 국회회담 제의와 함께 「남북불가침선언」을 제의했고, 1987년 1월에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어 군축을 토의하자고 했으며, 同年 7월에는 「다국적 군축협상」을, 11월에는 「포괄적 평화방안」을 이어서 내놓았다. 1990년 5월 31일 북한 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전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적용 가능한 군사적 신뢰구축 제안을 끊임없이 해왔다. 남한은 먼저 군사훈련의 告知와 참관 등 투명도 조치를 강조해 왔다. 또한 평양과 서울 사이에 공세전략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기습공격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공격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탱크, 장갑차, 대포 등 주요

군사장비의 단계적 감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화해·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은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과 이에 따른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으로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남북한의 포괄적 대화노력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지금은 오히려 남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이 아무리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제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한 제의 내용이 비슷하게 접근해 있다고 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화해·신뢰조치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을 필요로 한다. 역으로 남북한 쌍방의 군사적 화해·신뢰조치 노력이 축적될 때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가 유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남북한의 화해·신뢰구축에 있어서 정치적 분야와 군사적 분야의 노력 중 어느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대남적화통일 추구 및 완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속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대북한 군사적 화해·신뢰구축 노력을 가속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북한 군사적 화해·신뢰 구축 노력은 북한의 대남무력적화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한 포괄적 화해·신뢰구축 협상 재개노력이 지적될 수 있겠다.